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1998. 12. 4.

제출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의 실천사항으로 감면조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하는 규정신설

###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

다.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437('98. 11. 19)시달공문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li> <li>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li> <li>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li> <li>4. 이륜자동차</li> </ol>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li> <li>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li> <li>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li> </ol>